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의 안 번 호 의 결 연 월 일

제안연월일: 2011년 3월 3일

제 안 자: 의회운영위원회

□ 개정이유

○ 「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가 일부개정(부천시조례 제2591호, 2011. 2. 7.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시본청 일부 과의 명칭 변경과 일부 사업소가 폐지되어 이를 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하여 개 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 문화콘텐츠진흥과를 문화콘텐츠과로 하고,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공원사업소를 삭제함.(안 제3조제2항)

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"문화콘텐츠진흥과"를 "문화콘텐츠과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"창조도시사업단·공원사업소"를 "창조도시사업단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	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
관) ① (생 략)	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	②
같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기획재정위원회	2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복지문화국 중에서 문화예	다
술과 · 문화콘텐츠진흥과 소	<u></u> 문화콘텐츠과
관에 속하는 사항	
라. (생 략)	라. (현행과 같음)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건설교통위원회	4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사업소 중에서 맑은물청소	나
사업소・ <u>창조도시사업단・</u>	<u>창</u> 조도시사
<u>공원사업소</u> 소관에 속하는	업단
사항	